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03

발의연월일: 2022. 8. 24.

발 의 자:민홍철·전혜숙·김윤덕

김회재 · 김승남 · 설 훈

임종성 · 강득구 · 강선우

이학영 • 전용기 • 조정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에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조사에 따라 결함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자동차들은 최대 배터리 충전 용량에 제한이 발생하였고, 차주들은 광고·설명 등을 통해 고지받았던 차량의 최대 주행가능거리보다 성능이 떨어진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차량 성능 저하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받지 못하였음.

이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 성능의 과

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와"를 "제1호부터 제2호의3까지의 규정과"로 한다.

2의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2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	
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	
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	
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	
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	
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	
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	
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	
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	
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	
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 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결함
- ② ~ ③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 2의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의 과 다 표시
- 2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3. ------제1호부터 제2호의3 까지의 규정과-----
 - ② ~ ③ (현행과 같음)